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내규

(규정 제61호
제정 2020. 5. 27.)
전략기획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공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구를 말한다.
2. "위원회 관리부서"란 위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위원회 운영부서"란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령, 서울시 조례, 정부 또는 서울시 지침,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 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 방침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자
7.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감독권한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되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예외로 한다.

3. 외부위원은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 성별이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사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안건이 공개 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대하여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사규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가 대리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무위임자가 대리참석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규정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결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의결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규정,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자기소관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 및 공사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외부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는 공사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여비 지급 시 소속기관이 여비를 지급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공사 임직원은 담당 사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내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와 각종 심사·자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공사는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부서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중요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 칙(2020. 5. 27.)

(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6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성명 : (성명)

서 약 서

본인은 _____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직을 사임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제8조))

위임장

본인은 서울에너지공사 OOO 위원회 위원으로서 제 _ 회 OOO 위원회(20 . . .)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위임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년 월 일

서울에너지공사 OOO 위원회 위원장 귀하